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8. 3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, 개발부담금제의 부활,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목적외 이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부동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이 증원승인 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정원조정 573 → 576(증3명)
- 집행기관 562 → 565(증3명)
- 의회사무과 11 → 11(변동 없음)

○ 정원 승인 내역
- 토지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: 3명(7급1, 8급2)

3. 일부개정조례(안) :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참고사항

○ 정원 증원 승인관련 공문
○ 비용소요 추계서
○ 입법예고
- 예고기간 : 2006. 4. 18~2006. 5. 8(20일간)
-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성주군홈페이지, 군·읍면게시판 등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"573명"을 "576명"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"562명"를 "565명"으로 한다.

"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."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1조(목적) (생략) 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**573명**이며 다음 각호 와 같다. 1. 집행기관 : **562명** 2. 의회사무과 : 11명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 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---------- --**576명**---------- -----. 1. ----- : **565명** 2.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○ 토지관련 인력 증원

[별표 1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관련)

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							
기관별 /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과	직속 기관	사업소	읍	면
총 계	576	288	11	106	14	20	137
정무직 계	1	1	0	0	0	0	0
군 수	1	1					
일반직 계	448	239	6	55	11	18	119
4급	1	1					
4~5급	2	1		1			
5급	26	12	2	1	1	1	9
6급	119	72	1	7	3	6	30
7급	138	75	2	11	4	7	39
8급	107	64		22	1	1	19
9급	55	14	1	13	2	3	22
별정직 계	13	1	0	12	0	0	0
6급 상당	12	1		11			
7급 상당	1			1			
연구직 계	2	2	0	0	0	0	0
학예연구사	1	1					
임업연구사	1	1					
지도직 계	30	0	0	30	0	0	0
지 도 관	3			3			
지 도 사	27			27			
기능직계	82	45	5	9	3	2	18
기능 6급	2	2					
기능 7급	7	6		1			
기능 8급	13	10	1	1			1
기능 9급	26	15	2	3	2	2	2
기능 10급	34	12	2	4	1		15